

# 하남시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7. .

제출자 : 하남시장

## 1. 관련법규 및 근거

- 「하남시 위·수탁 협약서」 제7조(수탁기관의 업무범위)제1항제4호 : 제1호~제3호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업무(역사 청소업무는 '26년부터 제외)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제4호

제2조(정의)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신설 2023.5.1.>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위탁 계획)제1항및제2항

제6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제6호>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제1항, 제2항및제3항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 로 한다.

## 2. 제안사유

- 하남시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역사환경분야의 자체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역사환경 유지 및 고객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위탁운영비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민간위탁 운영계획

- 민간위탁 목적 : 하남선 복선전철 역사 환경관리 운영 사업
- 위탁운영 필요성
  - 하남선 위·수탁 직영 대비, 역사 환경분야 관리운영(자체 민간위탁)을 통하여, 향후 3·9호선 연장역사 추가 운영 대비 직영 역량 강화 필요
  - 도시철도 청소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로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
- 위탁사무 내용
  -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의 역사 환경관리 분야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기능실(역무실, 기계실 등), 노반(배수로), 내·외부계단, PSD, 승강기(E/S, E/L), 외부출구(캐노피 포함) 등 영업범위 내·외구간 일체(방역포함)

- 위탁운영 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운영 인원 : 32명(팀장 4명, 환경미화원 28명)
  - ※ 공항철도: 14역 97명, GTX-A: 9역 67명, 메트로9: 25역 179명(역당 7명)
- 사업신청 자격 : 최근 3년 이내 도시철도 청소 합산실적 20억원 이상 업체
- 기대효과 : 과업 최적화 설계로 18억원 절감(3년) 등 재정부담 완화
- 위탁 사업비 : 48억원(3년)
  - ※ 현재[서울교통공사 재위탁 : 66억원(3년)] 대비 18억 절감('25년도 예산기준)
- 위탁 세부사업비
  - 인건비 : 42억원

구분	인원	일일단가	시급단가	월근로시간	야간시간	금액(연/원)	비고
미화원	28	87,520	10,940	209	7.5	1,218,978,072	
소장.팀장	4	87,520	10,940	209	-	187,014,192	
주) 미화원 : 2025년 하남시 조례 생활임금/ 팀장 : 미화원+직책수당 20만원 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포함 금액임						1,405,992,264	

- 재료비 등 : 6억원

위탁기간	인건비	장비.재료.방역비 등	설계금액
'26.1~'26.12(1년)	₩1,405,992,264	₩189,808,956	₩1,595,801,220
'26.1~'28.12(3년)	₩4,217,976,792	₩569,426,867	₩4,787,403,659

####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분석 기준		분석 내용	분석 결과	비고
공공성	㉔ 서비스 공공성 및 중요성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높음	경제 활동을 위한 필수 환경 조성에 기여
	㉕ 서비스 수혜 대상	한정적인 주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수혜대상 주민의 범위	높음	전 국민의 교통환경 서비스 편의 제공
	㉖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높음	위탁기간 종료이후 업무중단 없이 지속 유지 필요
	㉗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공공서비스 공급 중단시 피해의 심각성,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	보통	전시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 소규모로 발생
효율성	㉘ 민간법인의 전문성 및 기술활용 가능성	도시철도 운행시설의 청소소실적 법인 限 사업 참가	높음	열차 안전운행 시설물 환경 유지관리에 적격
	㉙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기타 제경비 절감 등) 정도 등	높음	고비용의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대비 재정부담 최소화
	㉚ 사업성과 성과측정 용이성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높음	청소성과 품질목표(SLA) 달성평가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
	㉛ 관리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높음	사무위탁 적격자심사 및 선정으로 공정한 운영 확보

※ 전체 8항목중 7항목 높음, 1항목 보통 → 민간위탁 방식 수행 적정 사료

#### 5. 추후 행정사항

- 사업 공모제안서 및 원가·과업지시서 자체 설계(용역비 1천만원 절감)
  - 역사환경관리 자체 민간위탁 예산편성 위한 원가산출 등
- 사무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계획
  - 구성 시기/인원 : ' 25. 10월(예정)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9명 이하 위원 구성
  - 심사 지표 : 재정 건전성·법적 부합성, 운영 전문성 등 평가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5. 11월(예정)
- 사무위탁 수행 : 2026. 1월(예정)

## 관련 법령 및 조례

### 1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7조(수탁기관의 업무범위) ①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본 사업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업무(역사 청소업무는 '26년부터 제외)

### 2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신설 2023.5.1.>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5.1.>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개정 2023.5.1.>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

**제6조(위탁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필요성, 위탁기간 및 조건
2. 범위, 내용 및 타당성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12.>